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 안 이 유

- 경형자동차의 범위를 명시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6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경형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 과세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안 제12조의3)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 지원함으로써 주택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함(안 제13조의2)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 지원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안 제23조의2)

2. 주 요 골 자

- 경형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 감면(안 제12조의 3)
 -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 중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는 지방세법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불구하고 제5종으로 부과함.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안 제13조)
 -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 제13조 본문 중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함.
-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제13조의2)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 및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함.
-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안 제23조의2)
 -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전액을 면제함.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함.

3. 검토 의견

-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에 의거 공익상 기타사유로 인하여 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코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과 조례가 당해 과세 객체를 과세대상으로 선택해서 이에 과세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개별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및 불균일과세는 특정산업의 육성을 위한다거나, 지역발전 등 특수한 사정이나, 정책적인 목적을 위하여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코자 “경형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 감면”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임.
- 경형자동차등록에 대한 면허세 감면은 저소득자가 생활하는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경형자동차 소유 확대로 우리 사회의 과소비를 없애고 건전한 생활을 하도록 경형자동차소유자에 대한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불구하고 제5종으로 부과 (승용 및 승합 등 자동차 배기량 800cc, 길이 3.5m, 넓이 1.5미터 이하인 경형자동차에 대해 면허세 감면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6의 규정이 삭제)코자 감면 조례로 규정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됨.
-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IMF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한 주택건설사업의 부진에 따른 주택건설의 촉진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88조 및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 자금이 어려운 주택건설업자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주므로써 부진한 경기활성화에 이바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봄.
-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지방세감면은 어려운 경제의 활성화 필요성과 지역발전을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한 정책으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전액 면제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봄.